WEEKLY IBK 경제브리프
(818호) 2022-03-22
IBK경제연구소

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

◈ EU는 '23년부터 **탄소국경조정제도(CBAM*)를 도입하여, 일부 수입품목에 EU와 동일수준의 탄소배출 규제를 적용** *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

◈ 同제도와 관련한 **수출비중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높은 가운데, 한국은 철강품목 수출비중이 높음**

◈ 同제도 시행으로 **①對EU 수출감소 ②EU수출 M/S 재편** 등이 예상

◈ 同제도의 **유예기간 중('23년~'25년) 중소기업 대응방안**을 마련하고, **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**를 지원할 필요

□ (배경) EU 이사회는 핏포55* 일환으로 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(3.15**)

* 'Fit for 55'는 EU의 '2050 탄소중립'을 위한 중간목표로, '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'90년 대비 55% 감축하는 계획('21.7월 발표)

** **추진과정** : **('21.7월)**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→ **('22.3월)** EU 이사회 同제도 도입 합의 → **('22.6월 예정)** 3자 협의(집행위원회·이사회·의회)를 거쳐 최종안 확정

○ **(정의)** 수입국의 **탄소배출 규제**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**수입가격**에 반영

* 만약 배출권가격이 톤당 20불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배출권가격이 톤당 30불인 국가에서 수입할 때, 차액인 톤당 10불의 인증서(배출권)를 수입자가 구매

○ **(의의)** ①**탄소누출***(carbon leakage) 억제, ②**탄소중립**에 대한 **타국 참여유도**, ③강력한 **기후규제에 따른 EU의 산업 경쟁력 약화**에 대응

*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수준 차이를 이용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것

<탄소국경조정제도 개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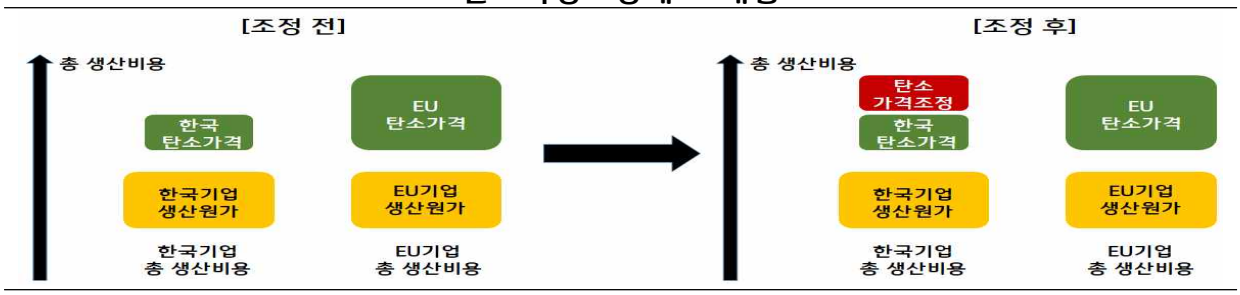

□ **(주요내용)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배출권거래제도의(EU-ETS) 확장형태**

○ **(①해당품목)** 철강·알루미늄·시멘트·전기·비료 등 **高 온실가스 배출** 산업

○ **(②적용국가)** EU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**모든 역외국***

*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, 세우타, 멜리야 제외(EU-ETS 참여·연계, 외부영토 등)

○ **(③집계대상)** 수입제품 **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***

* **(철강·전력·시멘트)** CO_2 **(비료)** CO_2, N_2O **(알루미늄)** CO_2, PFC_S

○ **(④방식)** 수입자는 **수입품에 내재된** 온실가스 **배출량**에 따라 **인증서*** **구매**

- 다만, 원산지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은 감면(㉮탄소배출권, 탄소세 등)

* 탄소배출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며, 인증서 가격은 EU의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에 연동

○ **(⑤도입시기)** '23년부터 3년의 **유예기간**을 거쳐 **'26년부터 도입**

- 유예기간 中 수입자는 인증서 구매의무는 없지만, 수입품에 대한 정보보고서*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짐

* 수입품 수량,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, 원산지에서 이미 구매한 탄소비용 등

□ **(수출현황) 同제도와 관련한 수출비중은 중국·러시아가 높은 가운데, 한국은 철강품목 수출비중이 높은 편**

○ 同제도 적용품목의 주요 수출국은 **노르웨이·중국·터키·러시아·스위스** 등

- 이 중 노르웨이·스위스는 同제도 적용제외 국가로, 시행 시 수혜가 예상

- 반면 제도가 시행되면 비용증가가 불가피한 러시아·중국 등을 중심으로 同제도에 강하게 반발*

* 同 제도가 ①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는 **상향방식 취지를 훼손**하고, ②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(CBDR**)을 위반한다고 지적

**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

<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별 EU 수입액 비중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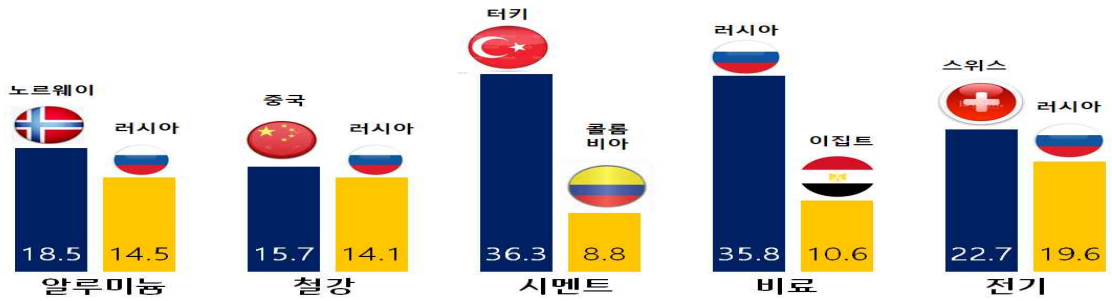

주 : 2019년 기준, 한국의 EU 수입액 비중은 8.1%(5위) 자료 : 산업연구원

❍ (국내) 同제도와 관련한 **수출규모**는 약 30억달러 (전체 對EU 수출의 6.3%)

- 그 중 중소기업은 약 6.1억달러의 同제도 적용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, 이는 對EU 해당품목 수출의 20.4%, 전체 對EU 수출의 1.3%에 해당

- 대부분 철강에 집중돼, 해당산업이 받을 영향에 유의할 필요

<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품목 수출 >

< 국내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별 수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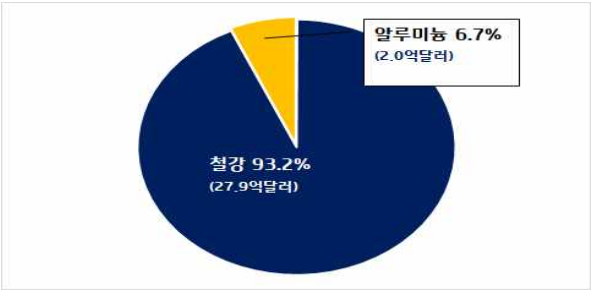

주 : 2019년 기준, 억달러 자료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□ (영향) 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, ①對EU 수출감소 ②EU M/S 재편 등이 예상

❍ (①위기요인)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한 비용부담은 결국 **한국 수출기업**의 **이익감소** 및 **매출감소**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음

- 한국의 탄소가격은 EU의 1/3 수준에 불과해 인증서 비용발생이 불가피

- 또한 對EU 수출기업에 중간재 등을 납품하는 中企의 매출감소 영향까지 고려하면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전망

※ 中企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품목 수출(KIEP,억달러,'19년 기준) : **직접** 6.1, **간접** 7.6(추정치)

❍ (②기회요인) 한국은 **수출경쟁국**인 중국·러시아 보다 **탄소가격이 높아** 同제도가 **시장점유율 확대요인**으로 **작용**할 것이란 의견도 상존

- 다만, 중국도 최근('21.7월)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·운영하고 있어 향후 시장의 성숙과정을 모니터링 할 필요

※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가격('21.10.29 기준, 환경부, 천원) : **(EU)** 80 **(한국)** 30 **(중국)** 7 **(러시아)** N/A

□ (시사점)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차원 대응방안을 마련

❍ 유예기간 중 **탄소배출 데이터 측정·관리체계 구축**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同제도 시행에 **효과적**으로 **대응**할 수 있도록 지원

❍ 장기적으로 **녹색기술 투자지원** 등을 통해 **中企 탄소중립 참여**를 유도

(작성자 : 중기산업연구실 과장 김범준 everydayisfriday@ibk.co.kr / ☎ 02-729-6213)